

인천지방법원 2020. 4. 9 선고 2020가단247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0. 4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미추홀구 C 대 169.2m²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6. 12. 2. 접수 제1595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문주희

별지